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례를 통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43호)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88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김태선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7.
3. 회부연월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박성훈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3.
3. 회부연월일 : 2026.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김태선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제30조(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u>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0조(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범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

현	행	김태선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신 설>		③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시·도인구감소지역 대응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범위, 시·도인구감소지역 대응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센터의----- ----- -----.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센터와 제3항에 따른 시·도인구감소지역 대응 센터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상호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¹⁾을 의미하고, 2021년 10월 최초 지정 이후 현재 전국 89개의 시·군·구가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5년 단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함.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비인구감소지역을 압도하는 등 지역 간 인구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데 2021년 10월 대비 2024년 10월의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율(0.82%)과 인구감소지역의 감소율(3.51%)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감소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위기는 타 지역보다 심각한 실정임²⁾.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³⁾,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⁴⁾.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김용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3년, 인구 변화는?」, 나라살림브리핑 제427호, 나라살림연구소, 2025.2.27.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기본계획⁵⁾ 및 시·군·구기본계획⁶⁾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이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안
 5. 제11조에 따른 관할 시·군·구 간 생활권 연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시·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가 시·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도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군·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군·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시·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시·군·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군·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해야 하나⁷⁾,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지원이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여건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독창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⁸⁾.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이후 1년차와 2년차 시점에서 총인구 순유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정투입 성과가 도출되는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까지의 정책 지연효과가 존재함에도⁹⁾,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인구감소 지역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대응일 뿐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음¹⁰⁾.

이에 개정안은 개별 인구감소지역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군·구기본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허웅호·이창수·김찬호, 「지방소멸위험에 따른 도시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국토연구』 제121권(2024. 6).

9) 임태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연효과 및 누적효과에 대한 연구: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40권 제1호 (2026. 3).

10) 허웅호·이창수·김찬호, 「지방소멸위험에 따른 도시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국토연구』 제121권(2024. 6).

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중앙 중심의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의 밀착형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적 정책 형성을 도모하며, 개별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 발굴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를 위해서는 시·도 연구원 등 센터를 위탁 운영할 지역 내 연구·행정 인프라의 역량과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자생적인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선행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면 지방자치단체 관할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도 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전국 시·도 연구원 9개소 중 일부는 관할 구역 내 인구감소지역이 부재하고 대다수 연구원이 전문 인력 부족 등 취약한 조직 구성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서 시·도 연구원의 인프라 확충 및 인구 정책 전문 인력의 선

제적인 육성과 영입을 지원하는 재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시·도 연구원 내 인구정책 관련 조직 현황]

시·도명	기관명	인력구성	비고
서울연구원	인구변화대응 연구센터	1명 (센터장 1)	非인구 감소지역
부산연구원	인구전략 연구센터	4 (센터장 1, 연구위원 1, 위촉연구원 2)	
대구정책연구원	대구인구감소 위기대응센터	5명 (센터장, 팀장 1명, 연구원 등 3명)	
인천연구원	인구정책연구단	1명(도시사회연구부 소속, 겸직)	
경기연구원	인구영향 평가센터	3명 (센터장, 연구위원 2명)	
강원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3명 (센터장, 연구원 2명)	
전북연구원	인구전략실	14명 (실장 1, 선임연구위원 4, 책임연구원 등 9)	
전남연구원	인구전략 추진센터	2명 (센터장, 전임 연구원 1명)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10명 (센터장, 연구원 등 8명, 운영인력 1)	非인구 감소지역

※ 자료 : 행정안전부

또한, 개정안들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박성훈의원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해 ‘인구 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차원에서 설치·운영되는 동명의 센터와 혼용될 수 있는바, 김태선의원안과 같이 명칭을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둘째, 두 개정안 모두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바, 조문의 제목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등의 설치·운영’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상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인구 관련 대응센터 설치 및 예산·인력 지원 현황이 상이한바,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예방적·전문적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지정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7